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통한 재난지원 근거 명확화〉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57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	2
※ 참고자료	9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개요 및 주요내용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안 제115조제1항)로 규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¹⁾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118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u>제공받을</u>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영한다.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① ----- ----- ----- ----- <u>제공받으며,</u> <u>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u> -----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u>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u> <u><신설></u> <u><신설></u> <u><신설></u> 2. ~ 5. (생략) ②·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 -----. 1.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가. <u>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u> 나.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u> 다.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로서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 및 사업 재기(再起)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²⁾에 따라 자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는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음.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4년 9월말 기준 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 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 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재적 가입자 수는 약 176만 9천명이고, 공제부금은 약 27조 6천억원임.

[표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현황(2024년 9월 말)

(단위: 명, 억원)

구 분	가입(A)	해약(B)	공제금지급(C)	재적(A-B-C)
공제가입자	2,909,561	330,716	810,139	1,768,706
공제부금	376,990	20,113	81,224	275,65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³⁾는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사업에 관하여 공제금의 지급, 가입자에 대한 대출, 복지 후생 사업,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관련 부대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이 중 공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 제1항제1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금의 지급”하도록 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개략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이러한 법률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제1호) 외에도 해산(제1호), 사망(제2호), 퇴임(제3호), 노령(제4호)과 함께,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제5호), 질병·부상(제6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제7호), 파산선고(제8호)를 공제금 지급 사유로 규정⁴⁾하고 있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산(법인만을 말한다)한 경우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서 퇴임한 경우
4. 60세 이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한정한다)으로 사업장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 가. 주된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주변 지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같은 법 제293조의5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596조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

당초 폐업 또는 해산(제1호), 사망(제2호), 퇴임(제3호), 노령(제4호)만을 공제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4년 3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한함)으로 인한 피해(제5호), 질병·부상(제6호), 희생절차의 개시결정(제7호), 파산선고(제8호)가 공제금 지급 사유에 추가로 규정된 것임.

이처럼 현행 법률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폐업 등으로 개략적으로 규정한 채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⁵⁾⁶⁾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재난⁷⁾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화하고,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중앙회는 제1항 각 호의 공제사유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을 지급한다.

5) 뉴시스,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 국가 보상 한계,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2021년4월14일자.

6) 뉴스1, 「확 바뀌는 노란우산공제, 16년만의 개편 이유는」, 2023년7월21일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목적에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로 규정하며, 이와 함께 (법인의) 해산이 폐업과 동등하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⁸⁾.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공제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폐업한 경우 중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계속 제외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동의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8)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2024년 3월)만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러한 제도변경의 절차상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하지만, 현행법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추가로 규정하려는 사항을 안 제 118조제1호에 간략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표 2] 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중기부 수정의견
제118조(소기업·소상공 인공제의 사업) ① 소 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소상공인공 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u>폐업 등</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공제사유가 발생한 경</u> <u>우 공제금의 지급</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18조(소기업·소상공 인공제의 사업) ① -- ----- ----- --. 1. ----- ----- ----- <u>다음 각</u> <u>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u> ----- ----- <u>가. 폐업 또는 해산</u> <u>한 경우</u> <u>나. 「재난 및 안전</u> <u>관리 기본법」 제3</u> <u>조제1호에 따른 재</u> <u>난의 발생으로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u> <u>피해를 입은 경우</u> <u>다. 그 밖에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경</u> <u>우</u>	제118조(소기업·소상공 인공제의 사업) ① -- ----- ----- --. 1. 소기업·소상공인공 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u>폐업 또</u> <u>는 재난 등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공제사유</u> <u>가 발생한 경우 공제</u> <u>금의 지급</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주요내용

□ 제도 개요

-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2007. 9월 사업 개시

□ 주요 내용

-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
 - * 제외업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무도장,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마사지업
-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 (공제사유) ①폐업, ②사망, ③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대표 퇴임), ④노령(60세이상 & 10년이상 가입), ⑤자연재난, ⑥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⑦질병·부상, ⑧회생·파산
-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 기준이율(2024.3분기) : 3.0%. 단, 폐업·사망시 3.3%(기준이율+0.3%)
-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